편의점 상비약 판매…배우자 출산휴가 3→5일로

행정안전·교통·법무

▲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=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과 같은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. 9월부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 59종과 행정안전부령 83종에 일괄 적용된다.

▲1339와 119 통합=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·상담과 지도, 이송병원 안내,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시·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담당한다.

▲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제한=8월부터 승객 보호를 위해 성범죄, 살인, 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받는다.

▲여객선 승선 신고서 제출 의무화=여객선 승선자는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.

▲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범칙금=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.

▲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 도입=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.

세제·공정거래·금융·부동산

▲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=새 집 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.

▲운전학원 교습비 10% 인상=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.

▲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=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.

▲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=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%(연 최대 240만원)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.

▲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=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인 코넥스(KONEX·Korea New Exchange·가칭)가 연내에 개설된다.

▲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=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%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. 전용 85㎡ 미만은 종전에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%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%로 확대된다.

▲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=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.

▲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투명성 강화=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.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.

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주택 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

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…민원서류 주민번호 사라져

지식경제·중소기업·통신·방송

▲기술료 인하=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내는 기술료를 종전 정부 출연금의 20%에서 10%로 낮췄다. 특히 조기 납부 기업에는 20~40%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.

▲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=사업경력 5년 이상인 기업 중 중앙 정부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. 기존에는 중복 지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었다.

▲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=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이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.

▲실제 통신요금 표시 의무화=통신사에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'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'이 시행된다. 통신사는 이동통신, 초고속 인터넷,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%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알려야 한다.

▲'빌 쇼크' 방지 사전고지제 시행=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'폭탄요금' 청구서에 당황하는 '빌 쇼크'를 막으려고 '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' 고시가 7월17일부터 적용된다. 이통사들은 이동전화, 와이브로, 국제전화,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,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교육·문화·여성·청소년

▲야생 동·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=야생동물 밀렵 적발 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.

▲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=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.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.

▲출산 전후휴가 분할 사용=8월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.

▲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=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.

▲만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 적용=7월부터 만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%만 자신이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▲감기약 등 '안전상비의약품' 편의점 판매=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, 감기약,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. 다만, 오남용을 막고자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게 된다.

환경·노동·보건·복지

▲학부모용 학원정보 서비스 확충=학부모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집 주변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돕는 학원 교습소 정보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도 교육청별로 9월 시행된다.

▲학교 진로진학상담 강화=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수 100명 이상 고교 2165개교 전체에 올 하반기 중 진로진학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된다. 시·도교육청은 8월31일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 1637명을 선발, 하반기부터 고교와 중학교에 배치한다.

▲청소년에게 술·담배 등 제공·대리구매 제공 금지='청소년보호법'이 개정돼 9월16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술·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,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.

▲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=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9월16일부터 PC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.

▲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 확인 등 강화=9월16일부터 판매·대여·관람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.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권자에게는 관련 게임의 특성, 이용시간,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.

▲아동·청소년 성보호 강화=8월2일부터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.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.

농식품·산림

▲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=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·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, 온·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.

▲포전매매(일명 밭떼기) 서면계약 안 하면 과태료=8월2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(밭떼기)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(농가)은 최대 100만원, 매수인(산지유통인 등)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▲낚시제한 기준 설정=9월10일부터 일정크기 이하(우럭 23㎝, 감성돔 20㎝ 등)의 수산자원은 낚시로 포획·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. 또 부패·변질된 물질, 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 제조·사용이 금지된다. /연합뉴스